
		<h1>보도자료</h1> <p>2021. 2. 10.(수) 배포</p>			
보도일	2021. 2. 15.(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2. 14.(일) 09: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	과 장	이혜진	(☎ 044-203-6369)
			교육연구관	이병승	(☎ 044-203-6482)
			교육연구사	조하준	(☎ 044-203-6841)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습 추진 -예비교원의 기초학력지도 활동도 교육실습으로 인정-

- ◆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실습 가능 기관 확대
- ◆ 미래교육센터 등을 통해 예비 교원의 비대면 교육실습 지원
-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실습 형태 유연화 등 안내서 보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양성과정의 **교육현장 연계성을 강화**하고 예비교원의 **공교육 지원 등 교육실습을 유연화**하기 위해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는 국가교육회의의 사회적 협의결과(2020.12.)에 따라 교원양성대학과 예비교원의 교육실습 관련 의견 수렴 및 제안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이번에 추진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까지 교육실습 기관을 확대**한다.

○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위(Wee)센터, 전문상담지원센터, 특수학교·특수학급 지원센터,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지원센터 등이 교육실습 기관으로 포함된다.

- 또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습 가능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 (교육부고시 제2020-240호, 2021.3.1. 시행)

○ 아울러, 예비 교원들의 교육실습 협력학교 선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 교사·학교, 교원 학습 공동체, 교과 연구회, 혁신학교 등과 연계하여 실습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② 둘째, 예비 교원의 기초학력 보조강사 참여 등 **공교육 지원활동도 교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예비 교원이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의 기초학력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협력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교육하는 경우 양성대학은 이를 교육 실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교육부는 **미래교육센터*** 등을 통해 **예비 교원의 학력 격차 해소 지원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예비 교원들이 교육봉사 등 교육 실습 가능 학교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실습 연결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 국공립 교원양성대학에 10개 설치(2020)→ 18개 추가 설치(2021, 누적 28개)

③ 셋째, 코로나 상황에서의 안전한 교육실습 및 양성대학과 예비 교원의 교육실습 지원을 위해 **교육실습 안내서**를 보급한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비대면 교육실습을 허용**하는 한편, **원격 교육실습 방안, 교육실습을 통해 길러야 할 역량**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이번 안내로 시도교육청, 교원양성대학, 협력학교 등 관련 기관 간 교육실습 활동 연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며,

○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양성대학·예비교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 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일부개정 내용
2. 2021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등 이수방안 안내



붙임1

「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일부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u>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u>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신설)·특수학교

붙임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등 이수방안 안내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불가피한 경우, 예비교원의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교직 적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021학년도에 한해 다음과 같이 운영 가능

□ 운영 방안

- ① (학교현장실습) 운영 방식, 기간 조정 가능(2020학년도 안내 연장적용)
 -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청·실습협력학교 간 협의를 통해 실습 진행

구분	기존	2021학년도에 한해 운영 가능
방식	▪ 학교현장에서 직접 수업, 참관, 실무 실습	▪ 원격 방식의 직접실습,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실습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
기간	▪ 직접실습 2학점 4주 이상 ※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	▪ 직접실습을 4주에서 2주로 조정,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실습 1학점(15시간 이상) 포함 운영 가능 ※ 직접실습 2주(1학점) + 간접실습 1학점(15시간 이상)
기타	▪ 자격증과 동일 표시과목, 학교급에서 실시	▪ 표시과목, 학교급과 동일한 실습이 어려울 경우, 양성기관 장 책임하에 최대한 유사 범위에서 실시

- ② (교육봉사활동) 교원양성기관장이 운영 가능(2020학년도 안내 연장적용)

기존	2021학년도에 한해 운영 가능
▪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대학의 장이 교내 또는 교외(온라인 방식 포함)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운영,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가능 ※ 방학 중 교육봉사활동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예시) 유·초·중·고 원격수업 지원, 예비교원이 수업 보조 자료를 제작해 학교 배부 등

- ③ (적·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21학년도 졸업 예정자의 경우 온라인 검사 및 실습 가능

- 온라인 이수여부, 방식 등 세부 기준은 교원양성기관 장의 재량으로 마련, 적·인성검사는 본인확인절차를 마련해 본인응시여부 철저 확인
※ 단, 교원양성과정 운영 상 필요 시,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졸업 예정자 이외에도 1회에 한해 온라인 검사 및 실습 인정 가능

- ④ (대체 이수) 코로나 19 확진·격리 시, 교육실습 대체 이수 가능

- 실습학교 구성원 또는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실습이 불가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대체프로그램 운영, 이수 인정 가능
※ 교원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이 불필요한 모임 자제, 코로나19 관련 장소방문 또는 유증상자 접촉 시 대학과 협력학교에 즉시 통보, 자가 격리 및 진단검사 실시하도록 안내

□ 기관별 이용 가능한 콘텐츠 목록

○ 중앙교육연수원

- '예비교원' 대상 서비스(예비교원으로 가입 시에만 활용 가능)

순	분류	과정명	차시	모바일 지원	대상
1	교수학습 (교육과정)	(초등) 창의 융합형 인재, 2015 교육과정으로 디자인하다	10	○	초등
2	교수학습 (교육과정)	(중등) 창의 융합형 인재, 2015 교육과정으로 디자인하다	16	○	중등
3	교수학습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 나도 실천할 수 있다	15	○	초·중등
4	교수학습 (평가)	(초등)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생 평가	15	○	초등
5	교수학습 (평가)	(중등)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생 평가	15	○	중등
6	교수학습 (평가)	(초등)사고력을 키워주는 서·논술형 평가	15	○	초등
7	교수학습 (평가)	(중등)사고력을 키워주는 서·논술형 평가	15	○	중등
8	교수학습 (수업혁신)	(초등)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수업혁신	15	○	초등
9	교수학습 (수업혁신)	(중등)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수업혁신	15	○	중등
10	교수학습 (수업혁신)	교육놀이, 신나게 놀아보자	15	○	유·초·중등
11	교수학습 (교육전반)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15	○	유·초·중등
12	교수학습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15	○	초·중등
13	교수학습	유치원 새내기 교사 승승장구 역량강화 프로젝트	15	○	유치원
14	교수학습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15	○	중등(직업)
15	교수학습	(학습부진아 능력 향상)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만들기 기와 놀이 게임으로 배움 이끌기	15	○	초·중등
16	교수학습	새내기 교사 김쌤의 좌충우돌 학교 적응기	15	○	초·중등
17	생활교육	교사, 감성 리더십으로 깨어나다	13	○	초·중등
18	생활교육	교육상황별 맞춤형 대화법	16	○	유·초·중등
19	생활교육	소통하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15	○	초·중등
20	생활교육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15	○	유·초·중등
21	생활교육	더불어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15	○	유·초·중등
22	진로진학	다양한 진로교육의 실제	15	○	초·중등
23	조직관리	사례로 배우는 학교문화	10	○	유·초·중등
24	에듀테크	인공지능시대, 모든 교사를 위한 SW교육	15	○	초·중등
25	에듀테크	너무 쉽다! 이 정도면 나도 SMART한 교사	15	○	초·중등

예비
교원

- '대국민' 대상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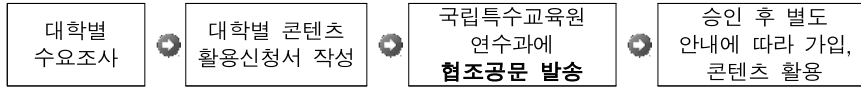
순	분류	과정명	차시	모바일 지원	대상
1	정책이해	(부정청탁 방지)교육가족을 위한 청탁금지법 이해하기	6	○	
2	생활교육	(아동학대 예방)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15	○	
3	생활교육	(안전)모두가 함께 하는 나침반 안전교육	14	○	
4	생활교육	(안전)사고는 NO! 안전은 OK!	30	○	
5	생활교육	(안전)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안전한 학교, 함께 만들어 가요	15	○	
6	생활교육	(인성)공감활동중심 인성교육	15	○	
7	생활교육	(인성)인성이 자라나는 행복교실	15	○	
8	정책이해	(장애인식 개선)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1	○	
9	정책이해	(장애인식 개선)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	○	
10	교수학습	(중등)사고력을 키워주는 서·논술형 평가	15	○	
11	교수학습	(초등)사고력을 키워주는 서·논술형 평가	15	○	
12	자기개발	(통일)(통일교육원)인문학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17	X	대국민 서비스
13	정책이해	낮설지만 궁극한 대안학교 이야기	15	○	
14	생활교육	다문화사회와 상생의 인문학	10	○	
15	생활교육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안전한 학교 생활교육	15	○	
16	인문소양	동북아 역사와 독도 바로알기	15	○	
17	생활교육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15	○	
18	교수학습	유튜브, 학교를 만나다	15	○	
19	정책이해	작은 학교, 학교의 길을 묻다	15	○	
20	진로진학	코칭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15	○	
21	에듀테크	크롬북을 활용한 에듀테크	5	○	
22	생활교육	학부모 상담 및 교육 참여	15	○	
23	생활교육	행복교육을 위한 긍정적 소통스킬 익히기	15	○	

※ 상기 과정을 포함, 70개의 대국민 과정을 학교 사정에 맞게 활용

○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정보시스템

◆ 국립특수교육원 콘텐츠는 별도 신청을 통해 활용 가능하며,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정보 시스템(<http://iedu.nise.go.kr>)을 통해 제공됩니다.

① 신청 절차



※ 대학별 공문 요청 없이 개인별 가입 불가

② 콘텐츠 활용신청서(예시, 대학 별 변경 활용)

순	학과명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활용 요청 과정명*	수강요청일
		⋮				
		⋮				
총 신청 인원			00명			

* 활용요청 과정명은 대학이 1가지 콘텐츠로 일괄 지정해야 함

③ 예비교원 제공 가능 서비스 목록(대학별 공문 요청 시에만 활용 가능)

순	분류	과정명	차시	모바일 지원	대상
1	교수학습	장애학생 국어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5	○	특수
2	교수학습	장애학생 수학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5	○	특수
3	교수학습	시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5	○	특수
4	교수학습	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5	○	특수
5	교수학습	교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지도 입문	15	○	특수
6	교수학습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30	○	초·중·특수
7	교수학습	특수교육 수업전문성 향상	30	○	특수
8	교수학습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15	○	특수
9	교수학습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5	○	특수
10	교수학습	한국수어 이해와 활용(기초)	15	○	전 학교급
11	교수학습	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기초)	4	○	특수
12	통합교육	현장중심의 통합교육(유치원)	15	○	유·특수
13	통합교육	현장중심의 통합교육(초등학교)	15	○	초·특수
14	통합교육	현장중심의 통합교육(중학교)	15	○	중·특수
15	통합교육	현장중심의 통합교육(고등학교)	15	○	고·특수
16	생활교육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30	○	특수
17	생활교육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기초	30	○	특수
18	생활교육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긍정적 행동지원 심화	30	○	특수

예비
교원

※ 이수증에는 차시 수가 아닌 콘텐츠의 실제 재생시간만 표기되므로, 대학 자체적으로 학점인정기준 마련 필요